

#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003~23
----------	---------

제출년월일	2003. 5.
제 출 자	거창군수

## 제정이유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육성발전과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봉사자의 책 임과 역할을 부여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자원봉사단체 상호간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함( 안 제6조)
-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제정근거

-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계획(행정자치부/경상남도)
-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 추진안(행정자치부)

#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거창군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주민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자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意識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 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각각의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지역사회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 및 체육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9.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약 및 해외 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 제2장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등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단체 또는 사회복지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사업
2.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 제1항에 의거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 등을 지도 감독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3장 자원봉사자의 등록·교육·배치 등

제8조(등록) ①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요청) ① 자원봉사가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 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기록관리) 센터의 장은 센터에 등록 후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교육사항, 활동사항, 수혜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입력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취소)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한 때
3. 자원봉사자, 봉사단체 또는 봉사활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때

## 제4장 자원봉사활동 진흥

제13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마일리지제 운영) 군수는 자원봉사실적에 따라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6조(실비지급) 군수 및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교육 및 행사참석, 봉사활동 실시 등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에 소요되는 물품구입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18조(보험가입) ① 센터·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